
「코로나19(COVID-19)」 예방 및 생활방역 이행을 위한

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(사업장용)

- 2단계 -

2020. 4. 23.

본 지침은 COVID19의 장기적 유행에 대응한 생활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종전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(1단계)을 일부 수정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(2단계)을 마련하였습니다.

❖ 사업장 대표자 및 관리자부터 실천하여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가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

1 유연근무 및 휴가 활용

- 유연근무제(재택근무, 시차출퇴근 등), 휴가제도(연차휴가, 병가, 가족돌봄 휴가 등)를 적극 활용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
 - * 특히, 임산부 등 감염에 취약한 노동자는 재택근무, 휴가 등 적극 활용
- 장소에 제약없이 근무할 수 있는 경우 재택근무 적극 활용
-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 이용이 집중되거나 근무지 내 밀접접촉에 따른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차출퇴근제를 활용
- 유연근무 및 휴가 등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 없도록 조치

2 회의·출장 및 소모임

- 회의는 가급적 **영상회의**(시스템이 없는 경우 영상통화)로 실시하되, 불가피하게 **대면 회의**를 할 경우 **일정 간격을 유지하여 마스크를 착용**하고 회의를 실시
- **국내·외출장은 최소한으로 실시하고, 대중교통으로 이동시 마스크 착용**
 - * 최근 14일 이내 해외 출장 등으로 외국에서 입국한 자는 국내 입국 후 14일째 되는 날까지 타인과 접촉하거나 외부활동 자제(휴가, 재택근무, 휴업 등 활용)
- **워크숍, 교육, 연수** 등은 가능한 **온라인** 또는 **영상**으로 실시
 - 온라인 또는 영상으로 실시가 어려운 경우 **소규모로 실시하되 발열(37.5℃이상) 여부 확인, 마스크 착용, 손소독제 비치 및 참석자 간 충분한 거리를 두고 실시**
 - * 유증상자는 워크숍, 교육, 연수 등 참석 금지
- **소규모 모임, 사내 동아리 활동, 취미모임, 회식** 등 다수가 모이는 활동은 **가급적 자제**하고 퇴근 후 **일찍 귀가하는 문화 형성**
- 사무실에 방문 외부인이 있다면 사무실 외에 간이 회의실 등을 활용하여 응대

3 의심증상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

- 출퇴근시 비접촉식 체온계 또는 열화상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**발열(37.5℃이상) 여부 확인**(1일 2회 이상)
 - * 필요한 경우 건강앱 등을 통해 체온의 이상 유무 등을 기록
- **발열(37.5℃이상) 또는 호흡기 증상**(기침, 인후통 등)이 있는 노동자는 **재택근무, 병가·연차휴가·휴업** 등을 **활용***하여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
 - * 회사 사규(취업규칙 등)에 병가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토록 하고, 노동자 요청 또는 동의가 있으면 연차휴가를 부여, 요청이 없는 경우 휴업 등을 활용
- **체온측정** 등을 통하여 근무 중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하도록 조치

4 사무공간 및 구내식당·휴게실 관리

- 개인별 고정 근무자리 배치, 사무실 내 **유휴공간 활용** 및 **사무환경 개선** 등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밀집 최소화
- 컴퓨터·책상·작업대 위치 및 방향 조정 등을 통하여 **노동자 간 간격을 최소한 1m 이상 유지**
- **좁은 공간**에 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**사업장**(콜센터 등)은 노동자 간 **투명 칸막이** 또는 **가림막** 설치(권장 높이: 책상 면에서 90cm)
- 구내식당은 **마주보지 않도록** 식탁을 배치하고, 개인 간 거리 유지, 점심시간 물림을 완화하기 위해 점심시간 **시차 운영**
- **실내 휴게실, 탈의실 및 다기능 활동 공간** 등을 여러 명이 **함께 이용하지 않도록** 하고 이용 시 **가급적 마스크 착용**

5 소독 및 위생·청결

- **사무실, 작업장, 다기능 활동 공간** 등을 주기적으로 **소독**하고, **매일 2회 이상 환기**
- **사무기기, 사무용품 소독·청결**을 유지하고, 개인용 컵·식기·티스푼 사용 등 개인 위생관리 철저
- **약수** 등 신체접촉 금지, 다수가 밀집된 사무·작업공간에서는 **마스크를 착용**하고, **손소독제**를 사업장 곳곳에 **비치**
- 통근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**통근차량을 매일 소독**하고 탑승 시 **기침 예절 준수, 마스크 미착용 시 이용 금지**